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758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한창민 · 신장식 · 김종민  
정춘생 · 서왕진 · 용혜인  
강경숙 · 김선민 · 황운하  
차규근 · 박은정 · 김재원  
윤종오 · 손 솔 · 김준형  
전종덕 · 정혜경 · 백선희  
이해민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최소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으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군소정당의 평

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헌법재판소 2026. 1. 29.자 2020헌마956, 2024헌바271(병합) 결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의할 때, 그 정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보다 더 적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도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의2제1항 전단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 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을 “해 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로, ““의석 할당정당””을 ““득표정당””으로, “의석할당정당에”를 “득표정당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석할당 정당”을 “득표정당”으로, “의석할당 정당”을 “득표정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석할당정당 간”을 “득표정당간”으로,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을 “득표정당에 배분한”으로,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을 “득표정당에 1석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  
----- 득표정당간 -----  
-----  
-----  
-----  
----- 득표정당에 배분한 -----  
-----  
-----  
----- 득표정당에 1석씩 -----  
-----  
----- . <단서 삭제> <후단 삭제>

